



법 무 부

수신자 강성준 귀하 (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12863830	접수일 2024. 08. 14.
---------------	-------------------

청구 내용	현행 1)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참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개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2863830)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자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A4 142매) 및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 (A4 65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분공개’ 지침에 해당하여 비공개 조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이상현(☎ 02-2110-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공개 일시	2024. 08. 19. 19	공개 장소	
-------	------------------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0원	② 우송료 0원	③ 수수료 감면액 0원	계(①+②-③)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재판관련 정보 등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조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자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A4 142매) 및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A4 65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분공개’ 지침에 해당하여 비공개 조항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법무부장관

교위 이상현 교정관 김세정 부이사관 양원동

협조자

시행 보안과-22805(2024. 08. 19.)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번호 02-2110-3396 팩스번호 / tkdghak12@korea.kr / 공개 구분
02-2110-0361

인쇄일자 : 2024. 08. 20. 11:17:26

인쇄자 : 강성준

210mm×297mm[백상지(80g/㎡)]

2/3

유의 사항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